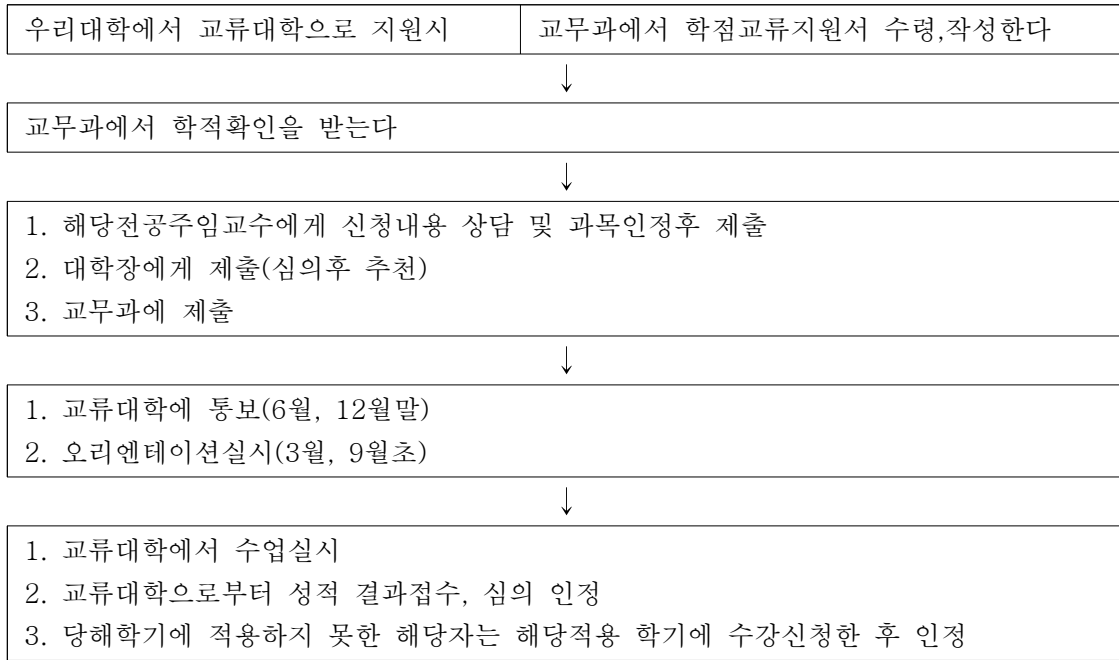


경인지역대학(교) 학점교류에 관한 지침

- 제1조** (목적) 이 지침은 학점교류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 3항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** (학점교류, 이수범위) ① 학기중 또는 방학중에 개설되어 있는 전체과목으로 한다.
②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졸업시까지 18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. <개정 2011. 11. 23.>
③ 의, 치, 한, 약학 계열과 예, 체능 계열은 동일계열에 한 한다.
④ 삭제<2007. 8. 8>
- 제3조** (지원자격) 타 대학 학점교류 신청은 1학년이상 수료한 학생으로서 수강신청 당시 지난 학기 성적 평균 평점이 3.2(Bo) 이상이며 징계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.
- 제4조** (추천 및 결정) 교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소속대학(교)의 총장이 교류대학(교)의 총장에게 추천하면 교류대학(교)의 자체심사를 거쳐 교류대학(교) 총장이 학점교류 학생으로 결정한다.
- 제5조** (이수제한) ① 재수강(“F” 또는 “D” 이하 과목)또는 본교에서 취득한 과목중에서 교류대학의 이수 과목과 유사 또는 동일한 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.
② 교류대학에서 이수할 교과목이 본교의 상급학년에 개설예정인 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.
- 제6조** (실시시기 및 지원자 신청) ① 계절학기 : 97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대학별 자체일정에 따라 별도 실시
② 정규학기 : 매 학기 사전 수강신청기간
- 제7조** (실시구분) : 정규학기 및 동, 하계 계절학기로 한다.
- 제8조** (학점교류 참여대학) : 가천대, 가톨릭대(성심교정), 강남대, 경기대, 경인교육대, 경희대, 단국대(죽전캠퍼스), 대전대, 루터신학대, 명지대, 서울신학대, 서울장신대, 성결대, 수원대, 아세아연합신학대, 아주대, 안양대, 외국어대(용인캠퍼스), 용인대, 을지대(성남캠퍼스), 인천대, 중앙대(안성캠퍼스), 평택대, 한경대, 한국항공대, 한세대, 한신대, 한양대(안산캠퍼스), 협성대 <개정 2007. 8. 8., 2014. 1. 28.>
- 제9조** (수강료) : 정규학기(본학기)수강료는 학생이 별도 납부하지 않으며 계절학기 수강료는 해당 대학교 수강료를 본인이 수강대학에 납부한다.
- 제10조** (취득학점 인정) ① 학점교류학생이 취득한 학점으로 소속대학 학부(과)장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인정하면 학적부에 기록한다. <개정 2007. 8. 8>
②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본교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공주임교수의 책임하에 관련담당교수와 협의하고 대학에서 심의하여 본교의 해당학부(과)에 개설한 동일과목으로 인정한다. 이때 상급학년의 과목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.
③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이 전공성격의 과목일지라도 본교의 해당학부(과)에 개설되지 않는 과목은 일반교양선택으로 인정한다.
④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을 해당학부(과) 전공과목으로 인정하고자 하나 적용학기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선수강 후 적용한다. 이때 성적관리는 해당학기의 학점으로 인정한다. <개정 2007. 8. 8>
- 제11조** (지원절차)



제12조 (협약서 준용) 이 지침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경인지역대학(교)학부학점교류 협약서에 의한다.

부 칙

- ① 이 제정지침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지침의 개폐는 교무위원회의 의결로 총장이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이 개정지침은 2007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이 개정지침은 201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이 개정지침은 2014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